

##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

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,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5. 9.

신길6동장



- 제 목: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
- 설치목적: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함.
- 시행자: 영등포구 신길6동장
- 관련근거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설치 예정 장소

지역	설치장소	비고
영등포구	신풍로25가길 2 (앞 전봇대)	이동식

-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5. 9. ~ 2024. 5. 29. (20일간)
- 촬영범위 및 시간 : 설치 예정 장소 주변, 연중 24시간 연속촬영

8. 공고방법: 영등포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dp.go.kr>)

8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신길6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기간: 2024. 5. 29.까지

나. 제 출 처: 영등포구 신길6동 주민센터

다. 의견제출내용

- 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

라. 의견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○ 우편 : (우)074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1-11

※우편은 제출기한(2024. 5. 29.)까지 도착하여야함.

○ 전화·팩스 : ☎ 02-2670-1336 / FAX 02-2670-1350

마. 제출양식: 의견제출서 **【붙임】**

바. 기타사항: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 제출서 1부. 끝.

